

[별표]<개정 1997.12.31.>

부족 원천징수세액 추가징수율(제3조제2항 관련)

1. 비과세 이자소득의 경우

추가징수율	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	
	1990년 12월 31일이전	1991년1월1일이후
계	100분의 11.75	100분의 21.5
소득세	100분의 10	100분의 20
방위세	100분의 1	—
주민세	100분의 0.75	100분의 1.5

2. 저율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

추가징수율	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	
	1990년 12월 31일이전	1991년1월1일이후
계	100분의 6.75	100분의 16.5
소득세	100분의 5	100분의 15
방위세	100분의 1	—
주민세	100분의 0.75	100분의 1.5

3. 소득세법(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144조제1항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(정상원천징수)한 경우

추가징수율	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		
	1988년 12월 31일이전	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	1991년 1월 1일이후
계	100분의 11.75	100분의 35.25	100분의 43
소득세	100분의 10	100분의 30	100분의 40
방위세	100분의 1	100분의 3	—
주민세	100분의 0.75	100분의 2.25	100분의 3

4. 방위세율의 적용 :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이자·배당소득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징수할 방위세율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여 적용한다.